

2026년도 하반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숙련기술과 업무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 도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사업장
* 품질관리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사업장

※ 「4. 산업분류별 지원 여부 및 지원제외」 참조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 관할지역 선택 - 가입 조회하기 - **고용 상시 인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지원내용) 숙련기술 및 업무 노하우 전수

3. 지원 개요

- (신청서 접수 기간) '26. 8. 12.(수) 10:00 ~ 8. 20(목) 18:00 [9일간]
- (접수방법) 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규모) 190개 기업 이내(예정)

○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지원분야) 14개 분야 단, 신청기관별 1개 분야(직종)만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지원신청기관당 20시간(일반 과정만 신청, 단기컨설팅 불가)
- 산업현장교수는 최대 3건까지 지원 가능

○ (지원시간) 평일 09:00~21:00 / 1일 최대 5시간까지 지원 가능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임시공휴일, 토요일 지원 불가 (중식 및 석식 시간 지원시간에서 제외)

○ (지원실시 기간) 2026. 9. 14(월) ~ 2026. 11. 13(금) (2개월)

- 지원신청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원 실시

○ (지원가능교수) '26년 활동가능 산업현장교수 556명(13~17기)

○ (지원비용) 무료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용에 따른 수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

4. 산업분류별 지원 여부 및 지원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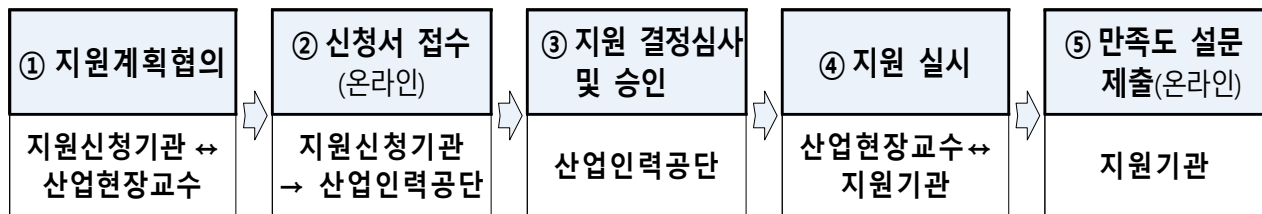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별 지원 여부)

산업분류	지원여부
1. 제조업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제외)	가능
2. 광업	가능
3. 건설업	가능
4. 운수 및 창고업	가능
5. 정보통신업	가능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불가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능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능
9. 도매 및 소매업	가능
10. 숙박 및 음식점업	가능
11. 금융 및 보험업	불가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능
13. 그 밖의 업종	가능

○ (지원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중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2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 기업
(품질관리분야는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100인 초과 기업)
- 지원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 '26년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 (승인 후 지원 포기한 기업 포함)
- 최근 2년('24~'25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산업현장교수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민간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에 준하는 기관

5. 지원 절차



① (지원계획 협의) 지원신청기관은 지원신청서 접수 전에 지원 희망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를 선택하여 지원요청사항 및 지원계획 사전 협의

※ 필요 시 소재지(또는 지원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신청분야에 적합한 산업현장교수 추천 요청 [별지2] '지부·지사별 관할구역 및 문의처' 참조

-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신청기관의 지원 요청사항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 수립
- 지원시간(09:00~21:00), 지원 가능일자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②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기관이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1.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 접속
2. 단체회원 로그인 (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단체회원 가입 및 공단 승인 후 로그인)
 - ※ 본사, 지사(공장 등)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본사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3. 상단 '산업현장교수' - '산업현장교수 지원 -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등록
 - ※ 신청 버튼 클릭 후 접수 마감일시 이전까지 상시 수정 가능 (지부·지사에서 서류 접수하여 '심사중'으로 처리된 서류는 수정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마이스터넷에 직접 입력
- ‘관할소속기관’은 지원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 선택 [별지2] 참조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지원받을 장소가 다른 경우는 [별지3] ‘지원 장소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소재지 관할 지부·지사 선택
- ※ 지원장소는 지원신청기관 사업장 내 장소만 가능 (본사, 지사(공장 등) 내 장소)
- 첨부서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에 맞게 첨부
- ※ 필수서류 누락, 직인·날인 누락 등 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구 분	첨 부 서 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 직무수행계획서 (기업 직인 또는 대표 도장, 산업현장교수 서명 날인 필수) [별지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5]
선택서류	- 지원 장소 확인서 [별지3]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지원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

- ③ (지원결정 심사 및 승인) 공단은 지원신청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적격기관 결정
- 지원결정 심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건을 선정하되,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최종 선정 기준】

판단기준	선정 세부 기준
1. 제외	☐ 제외 : 지원시간이 20시간이 아닌 경우, 단기 과정으로 신청한 경우
2. 득점	☐ 60점 이상의 신청 건 중 고득점순 으로 선정
3. 실적	☐ '26년 상반기 지원 0~1건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1건에 대해서는 고득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
4. 등급	☐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상반기 승인 건 포함(지원기관 취소건 포함)하여 본인의 등급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결과 확인) 2026. 9. 14(월) 이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 ④ (지원실시)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원 실시
- ⑤ (만족도 설문 제출) 지원기관은 지원 종료 후 마이스터넷을 통해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설문 제출(온라인)

※ 마이스터넷 → [산업현장교수지원] → [신청결과조회] 에서 만족도 설문 실시

- (최종성과보고서 제출) 산업현장교수는 지원 종료 후 최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 직인(도장) 날인 후 마이스터넷으로 제출

6. 지원기관 결정(승인) 후 준수사항

- (직무수행계획서 준수)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시, 지원장소, 지원내용 등을 준수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사업 수행
- (지원변경 신청 절차 준수) 지원 기간 중 불가피하게 지원일시, 지원장소, 지원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이스터넷으로 사전 변경신청하고 관할 지부·지사 승인 후 지원실시
 - 지원장소는 지부·지사 관할구역 내에서만 변경 가능
 - 변경신청 기한

구분	제출 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가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자 보다 빠를 경우	<u>지원변경 하고자 하는 일자의 3일전까지 변경신청</u>
변경하고자 하는 일자가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자 보다 늦을 경우	<u>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일자 3일전까지 변경신청</u>

※ 천재지변, 지원대상자 긴급 출장 등에 의한 지원기관의 요청, 산업현장교수의 질병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기한 내 사전 변경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 시작시간 전까지 변경신청 후 관할 지부·지사에 변경신청 내용 유선 통지

※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지원일자, 지원시간, 지원장소,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원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및 지원금 미지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별지6]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 기준' 참조

- (모니터링 실시) 공단은 최종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지원사업이 실시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불시에 현장 방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산업현장교수는 매월별로 월별지원실적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익월 7일까지 마이스터넷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와 최종성과보고서 모두 제출
 - 지원 기간이 1개월 이내 등 단기에 종료되는 지원은 월별지원실적보고서 생략하고 익월 7일까지 지원활동일지, 지원대상자 명단, 최종성과보고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 공단 관할 지부지사에서 서류 보완을 위해 지원금 신청서, 최종성과보고서 등 서류 반려 시 산업현장교수는 공단이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하여 수정 제출

○ (고객만족도 조사)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 협조

- (자체 조사) 지원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기관 담당자는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온라인)
-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관련하여 내년 12월 ~ 내후년 2월 중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정보 유출 방지)

- 지원기관은 산업현장교수로부터 지원 받은 내용을 산업현장교수와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사업 이행과정에서 공단과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서류 보관)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지원 활동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내용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기관과 산업현장교수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미선정, 지원 취소 등)는 공단의 결정에 따름
- 지원 결정 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에 따른 산업현장교수의 해촉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원사업 즉시 중단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 제15조(해촉·위촉 배제)

위촉된 산업현장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해 산업현장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현장교수에 위촉된 경우
2. 산업현장교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지원시간에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원활동 위반사항이 경고 2회에 달하는 경우
5. 산업현장교수 본인이 활동 포기 요청을 한 경우(사망 포함)
6. 공단 내·외부 사업에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지원기관이나 산업현장교수가 ‘6. 지원기관 결정(승인) 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공고된 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마이스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니, 마이스터넷 확인 바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운영지침」 및 공단의 결정에 따름

[안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관련 제반 서식 및 매뉴얼은 「마이스터넷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지1]

지원분야별 세부 직종

분야 (NCS 대분류 코드)	세부 직종 (NCS 중분류 코드)
1. 기계 (NCS 15)	기계가공[기계설계, 기계가공] (NCS 15_01, 02)
	생산·공정관리[기계조립·관리, 기계품질관리] (NCS 15_03, 04)
	냉동공조[기계장치설치] (NCS 15_05)
	차량 및 수송[자동차, 철도차량제작, 조선, 항공기제작] (NCS 15_06, 07, 08, 09)
	금형 (NCS 15_10)
	스마트공장 (NCS 15_11)
2. 재료 (NCS 16)	금속재료 (NCS 16_01)
	세라믹재료 (NCS 16_02)
3. 화학·바이오 (NCS 17)	화학·바이오공통, 석유·기초화학물 (NCS 17_01, 02)
	정밀화학, 바이오 (NCS 17_03, 05)
	플라스틱·고무 (NCS 17_04)
4. 섬유·의복 (NCS 18)	섬유제조 (NCS 18_01)
	패션 (NCS 18_02)
5. 전기·전자 (NCS 19)	전기 (NCS 19_01)
	전자[전자기기일반, 전자기기개발] (NCS 19_02, 03)
6. 정보통신 (NCS 20)	정보기술 (NCS 20_01)
	통신기술 (NCS 20_02)
	방송기술 (NCS 20_03)
7. 식품가공 (NCS 21)	식품가공 (NCS 21_01)
	제과·제빵·떡제조 (NCS 21_02)
8. 건설 (NCS 14)	토목[건설공사·관리, 토목] (NCS 14_01, 02)
	건축[건축, 조경, 도시·교통] (NCS 14_03, 05, 06)
	건설기계운전·정비 (NCS 14_07)
	플랜트[플랜트, 해양자원] (NCS 14_04, 08)
9. 디자인·문화콘텐츠 (NCS 08)	디자인 (NCS 08_02)
	문화콘텐츠 (NCS 08_03)
10. 이·미용(NCS 12)	이·미용 (NCS 12_01)
11. 음식서비스 (NCS 13)	음식조리[식음료조리·서비스 중 음식조리에 한함] (NCS 13_01_01) (중분류 NCS 13_01 중 소분류 01 음식조리만 해당)
12. 공예 (NCS 22)	공예 (NCS 22_02, NCS 24_01_04) (중분류 NCS 24_01 중 소분류 04 화훼장식 포함)
13. 산업안전 (NCS 23)	산업안전 (NCS 23_06)
14. 품질관리 (NCS 02)	품질관리[생산품질관리 중 품질관리에 한함] (NCS 02_04_02) (중분류 NCS 02_04 중 소분류 02 품질관리만 해당)

※ 경영·회계·사무, HRD는 품질관리분야로 지원

※ NCS 분류코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s://www.ncs.go.kr>) 분류에 따름

[별지2]

지부·지사별 관할구역 및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관할 구역	
서울지역본부	02-2137-0407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서부지사	02-2024-1736	(03302)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서울남부지사	02-6907-7175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서울강남지사	02-2161-9116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T412타워 1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원지사	033-248-8536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033-650-5725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경인지역본부	031-249-1237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안산시	
인천지사	032-820-8609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사	031-850-9112	(11801)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동부지사	031-750-6263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경기남부지사	031-615-9042	(17561)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2층, 3층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경기서부지사	032-719-0805	(144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63번길 69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부산지역본부	051-330-1903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부산남부지사	051-620-1973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부산광역시 남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	
경남지사	055-212-7214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울산지사	052-220-3237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울산광역시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관할 구역	
경남서부지사	055-791-0713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대구지역본부	053-580-2337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경북지사	054-840-3024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상북도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경북동부지사	054-230-3225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북서부지사	054-713-3012	(3937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2층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광주지역본부	062-970-1737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지사	063-210-9215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지사	061-720-8522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전남서부지사	061-288-3319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제주지사	064-729-0728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전북서부지사	063-731-5521	(54098)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번지 풍산빌딩 2층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전지역본부	042-580-9115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지사	043-279-9021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남지사	041-620-7655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홍성군	
세종지사	044-410-8014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5층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북북부지사	043-722-4316	(27502)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14, 4층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별지3]

지원 장소 확인서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주소)	실제 지원장소 및 사유	
				실제 지원받는 장소의 주소	사업자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사유(간단하게)

※ 지원장소는 지원신청기관 사업장 내 장소만 가능 (본사, 지사(공장 등) 내 장소)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소가 다를 경우를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지원 사업 취소·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4]

직무수행계획서

지원분야 (직종)	()	산업현장교수	(서명)
지원신청기관		기 관 장	(직인)

지원 장소		담 당 자	
		이메일(E-mail)	

총 지원기간	총 지원시간	1일당 지원시간
월 일~ 월 일	○ ○ ○ 시간	일당 ○ 시간(00:00~00:00) (식사시간 : 00:00~00:00)

※ 지원금액 산정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컨설팅 과정 여부	교육 효과(예상치)	총 지원시간에 따른 수당	여비 및 숙박비 신청
아니오	○ 만원	○ 만원	○ 만원

※ 단기 컨설팅 과정(1일 2시간 이내로 총 8회 이하 과정)은 시간당 15만원, 그 외는 시간당 10만원 지급

※ 여비 및 숙박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후 지급 불가합니다.

※ 총 수당, 여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지원금액과 교육 효과성과의 비교를 통해 선정 및 지원시간 배분

지원내용 및 성과목표

요구 및 지원내용(세부항목별 구분)

연번	지원 요청사항	지원내용	최종성과목표	일정
1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내용 작성		
2		<양식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3				
4				

☐ 일시별 지원 세부 계획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일시	세부내용	방법	비고
00월00일(요일) 00:00~00:00	일자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시간대별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기대효과(예상) :

위와 같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 기준

1. 산업현장교수 조치 기준

조치내용	조치 기준
주의	○ 지각, 외출, 조기종료 등으로 계획된 지원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1일 지원시간의 20%이하 미실시) ○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시간을 임의 변경한 경우
경고	○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지원을 미실시한 경우(1일 지원시간의 20%초과 미실시) ○ 지원시간에 참여했으나 실제 지원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계획서 상 수행내용과 실제 지원내용이 지원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날짜, 지원시간,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 ○ 제25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를 활동한 연도의 12월 두번째 금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원기관 조치 기준

조치내용	조치 기준
주의	○ 지원기관 또는 전수대상자 귀책사유로 1일 지원시간의 20%이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직무수행계획서의 지원시간을 임의 변경한 경우
경고	○ 지원기관 또는 전수대상자 귀책사유로 1일 지원시간의 20%초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전 계획변경 신고 없이 지원신청기관 임의로 지원날짜, 지원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7]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검색 방법

1. 마이스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산업현장교수」 → 좌측 산업현장교수 인력풀 클릭
2. 분야 선택 또는 직종, 소분류에서 직종으로 검색
3. 이름 클릭하면 세부 정보 확인 가능 (세부정보는 로그인 후 확인 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고객센터 온라인오피스

통합검색

마이스터Net
숙/련/기/능/인/포/탈

숙련기술전수 숙련기술인 기능경기대회 **산업현장교수** 알림/소식 숙련기술홍보관 기관안내

산업현장교수소개
산업현장교수 소개
산업현장교수 인력풀

산업현장교수선정
신청하기
신청결과조회
산업현장교수선정 통계
심사(내부용)

산업현장교수지원
신청하기
신청결과조회
산업현장교수지원 통계
심사(내부용)
지원 희망 사전 조사

산업현장교수활동보고
산업현장교수 지원현황(변경신청)
변경신청 결과조회
산업현장교수 최종보고서
우수사례 신청

지역: 전체 분야: 전체 직종: 소분류: 이름검색:

번호	구분	이름/단체명	지역	분야, 직종, 소분류
679	산업현장교수	강!	전국	분야 전기전자 직종 전기 소분류
678	산업현장교수	강!	경기	분야 기계 직종 차량및수송 소분류 자동차관리,자동차정비,자동차정비관리
677	산업현장교수	강!	서울	분야 디자인 직종 디자인 소분류 디자인
676	산업현장교수	강!	전국	분야 재료 직종 금속재료 소분류 금속가공
675	산업현장교수	강!	전국	분야 기계 직종 생산공정관리 소분류 기계생산관리,기계품질관리

[별지8] 지원신청서는 전산시스템(마이스터넷)에 직접 작성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 신청서

신청인	부서		연락처	전화	
	직위			휴대폰	
	성명			FAX	
				E-mail	
사업장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업종		상시근로자수 명		
	연 매출액		생산제품		
	소재지				
지원신청 분야		☐ 기계분야 ☐ 재료분야 ☐ 화학·바이오분야 ☐ 섬유·의복분야 ☐ 전기·전자분야 ☐ 정보통신분야 ☐ 식품가공분야 ☐ 건설분야 ☐ 디자인·문화콘텐츠분야 ☐ 이·미용분야 ☐ 음식서비스분야 ☐ 공예분야 ☐ 산업안전분야 ☐ 품질관리분야			
지원목적 및 세부 요청사항					
지원대상자 전수시간 할애 계획					
달성목표					
예상기대효과					
희망 산업현장교수			지원희망 일자		
지원대상자		○○○ ○○○ (이름기재)		지원 장소	
위와 같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지원사업 취소·중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기관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지원장소 확인서 1부. (해당 기관만 제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